

# 십대여성인권센터

우150-8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REDACTED]  
전화 02)6348-1318 전송 02)2690-1255 이메일 [REDACTED]

**'만 13세의 지적장애 여아를 성매수한 가해자에게 불법성이 없다는  
서울서부지방법원(민사21단독 판사 [REDACTED])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 성명서 공동연명 제안서

십대여성인권센터는 가출하여 다수의 성인 남성들에게 성적인 착취를 당한 만 13세 2개월의 지적장애 여아를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6명의 가해자를 특정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이 그들의 악행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형사재판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2016년 현재, 1건은 피고측이 인정하여 승소하였고, 다른 2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각기 상반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건은 일부승소 판결하여 청구한 배상액의 일부를 인정하였고, 다른 1건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행위를 한 범죄의 상대방이 된 청소년('대상청소년')이라 하여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패소 판결하였습니다. 지적능력이 7세수준이며, 의제강간이 인정되는 연령인 만 13세를 겨우 2개월 지났을 뿐인 아동청소년을 자발적 성매매 행위자로 보고 피해자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벌어지는 성범죄를 점점 더 심각한 범죄행위

로 보고 더욱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물며 그 아동이 지적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임에도 우리 나라에서는 시대에 역행하는 반인권적이고, 다분히 성범죄자 중심의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당사국 중의 하나인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성착취에 희생된 아동·청소년이 가해자가 착취하는 과정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 처벌하거나 범죄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청소년이 법적으로 희생자의 신분이며 이에 따라 대해짐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아동·청소년을 법적인 약자로 보고 희생자의 신분으로 대하기는커녕, 더욱이 피해 아동·청소년이 지적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범죄의 행위자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부의 시각이 이러하데 어떤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려 법적 보호를 받겠다고 할 것이며, 어떤 성인 성범죄자가 법이 두려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멈추겠습니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성착취 범죄일 뿐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 사건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 이번 판결의 부당성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하며, 가뜩이나 성인 성매수자들에 대해 형사적으로 낮은 처벌과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이때, 손해배상청구가 반드시 인정되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이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까지 짓밟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길이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위축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이에 -아 래- 와 같이 사건진행경과를 알립니다.

현재 2건의 상반된 판결은 모두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많은 시민들과 단체들이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알려야 하고, 반드시 성인 성범죄자들이 그들의 악행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함께 성명

서에 공동연명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아 래 -

## 1. 법적 지원 경위

2014년 6월경, 만 13세를 2개월 지난 한 아이가 모친의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 놀다가 떨어뜨려 액정이 깨졌다. 엄마에게 야단맞는 것이 두려워 아이는 가출을 결심하고 핸드폰의 친구찾기 앱을 통해 '가출함, 재워줄 사람' 이라는 방을 만들었다. 그리고 한 성인 남성을 만났다.(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의 가해자 양씨) 또래에 비해 지능이 약간 떨어져 학교에서도 자주 왕따경험이 있던 아이는 갈곳이 없어 그 남성을 따라 모텔에 가서 성폭행을 당했다. 첫 성경험이었고 너무 무서웠고 혼란스러웠던 아이는 더욱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핸드폰 앱을 통해 친구를 찾았다. 그후 6명에 달하는 성인 남성들에게 간음 및 추행을 당했다. 가출신고가 되어 있어 거의 1주일이 지난 후 아이를 찾았지만 아이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이의 엄마는 거지꼴이 되어 있고 뭔가 이상한 아이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서울의 한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성폭력으로 신고한 후 국선변호사 임회하에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진술하였다. 지능이 7세 수준인 만 13세 아이가 가출하였다 하지만 그 아이를 만났던 십여명에 달하는 어떤 성인도 아이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도리어 이 아이를 성폭행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고 아이를 안심시킨 후 황설수술하는 아이를 통해 가해자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등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아이는 그 일이 있고 난후 극도로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심각한 우울증상을 보였고 급기야 자살시도까지 하였다. 결국 어머니는 아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해야 했다. 그러나 잘 해결될 줄 알았던 사건은 이 사건이 성폭력사건이 아니라 성매매사건이므로 아이를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며 아동센터에서

지원을 중단하여 이 아이의 심리상담을 하던 선생님의 의해 우리 센터에 연계되었다. 아동센터에서도 성폭력 아동만이 지원의 대상이기 때문이었다. 12월이 되어 사건은 하나씩 결정이 났다. 총 6명의 가해 남성이 특정되어 성폭력 범죄로 조사를 받았지만 각각의 사건이 모두 성매매사건으로 인지되었을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12월까지 3명의 가해자 중 1명만 아동청소년성매매로 기소되었고 나머지 2명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리 되었다. 만 13세를 겨우 2개월 지냈을 뿐인 아이를 강제가 아니라 하여 성폭력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대가를 주지 않았다 하여 성매매로도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본 센터 법률지원단에서 이 사건을 받아 무혐의 결정된 가해자 2인에 대해 항고를 하였고,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본 센터 변호사들이 변호를 맡았다.

## 2. 형사소송 판결 결과와 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

[표] 형사소송 판결 결과와 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

가해자	형사재판부	판결내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현황
양OO	서울동부지법	벌금 4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	서울서부지법 1심 패소, 항소예정
하OO	서울북부지법	벌금 10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진행사항 없음
최OO	인천지법	징역10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서울서부지법 승소
김OO	전주지법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서울서부지법 1심 승소, 배상금 일부인정, 피고/원고 모두 항소함
표OO	대구지검 재기수사 결정	기소중지(소재불명)	
이OO	서울동부지법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서울동부지법 1심 진행 중

참고자료 1) 두 판결문 비교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000000 판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000000판결의 비교

‘만 13세 2개월의 지적장애 여아를 성매수한 가해자에 대한 엇갈린 판결’

2014. 6. 6. 만 13세 2개월의 지능지수 70정도인 여아가 가출한 뒤, 성인 남성에게 의해 모텔로 유인되어 성적인 착취를 당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가출 이후 잘 곳이 없던 여아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인 남성 양씨를 만나 모텔로 유인되어 성적인 착취를 당했다. 또 다른 성인 남성 김씨는 이 사건 여아를 차에 태워 지방으로 데리고 가 모텔에 투숙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두 사건의 가해자 모두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법률 제13조(성매수등)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첫 번째 사건의 가해 남성은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가 인정되어 벌금 400만원이, 두 번째 사건의 가해 남성은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간음한 행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 사건 피해 여아와 그 법정대리인은 각각의 가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죄행위들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와 그 치료를 위해 지출한 병원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양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한편, 김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는 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여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렸다.

양씨에 대한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첫째, 아동·청소년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 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인데 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성은 아동·청소년의 사회적·공공적인 성일뿐 그 아동의 개인적 성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판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도모·보호하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가 성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회적·공공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이 보호받는다고 할지라도 이는 그러한 행위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질서가 확립·유지되는 반사적 효과가 있는데 불과한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곧바로 해당 아동·청소년이 성매수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해자로 평가된다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이 성매수자에게 어떤 권리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위 판례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적인 성과 사회적·공공적 성을 구분 짓고 그 보호의 대상을 아동·청소년의 사회적·공공적 성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 판결은 청소년 성보호법에 규정된 대로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은 대상청소년일 뿐 피해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이 사건에서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발달이 부진하고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며 인지적인 제한으로 인하여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거나 사회적으로 적응하는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만 13세의 지적장애가 있는 여아조차도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했던 대상청소년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반면, 김씨에 대한 판결은 양씨에 대한 판결과 달랐다. 재판부는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선량한 성풍속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보호도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고, 둘째 아동·청소년들은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약자에 해당하는 점, 셋째 원고는 이 사건 범죄행위 당시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일 뿐만 아니라 그 지능지수 등에 비추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더욱이 피고는 원고의 성적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와 가출 등으로 인한 궁박한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숙식제공 등으로 유인하여 성적만족을 얻은 자로서, 그 표면적인 폭행이나 협박의 유무를 불문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은 피해자가 아닌 대상청소년일 뿐 vs 아동·청소년이 사회적 약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가해자의 불법성 인정 가능

이같이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린 데에는 양씨에 대한 판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성매도자가 미성년자일지라도 청소년 성보호법 상 대상청소년으로 규정되어 피해자로 인식되지 못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의 불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청소년 성보호법이 미성년자의 성을 산 성매수자를 법적으로 처벌하면서도 범죄의 대상이 된 미성년자는 피해자로 보지 않는 것은 모순이며 그러한 규정이 미성년자의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반면 김씨에 대한 판결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않았고 사회적인 약자라는 점, 나아가 이 사건의 원고가 가진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상청소년 규정에 함몰되지 않고 가해자의 불법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청소년 성보호법의 보호법익은 아동·청소년의 사회적·공공적 성에 한정 vs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도 청소년 성보호법의 보호법익

또한, 양씨에 대한 판결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 1 전원재판부결정)을 인용하면서 청소년 성보호법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그것을 사회적·공익적인 측면으로만 한정한 반면, 김씨에 대한 판결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의 보호법익은 선량한 성풍속에 그치지 않고 개별적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도 그 보호법익으로 본 점이 두 판결의 결과를 다르게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엇갈린 판단을 한 두 재판부의 판결은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게 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2) 엇갈린 판결이 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문 2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 손해배상(기)  
원 고 1. 김  
원고 1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2.  
원고들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수  
피 고 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환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 2016. 4.  
판 결 선 고 2016. 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김 ○○ 에게 22,064,662원, 원고 ○○○ 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6.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이 유

###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김 ○○ 은 만 14세로서 지능이 약 70정도 되는 경계성 장애를 가진 지적장애이고, 원고 ○○○ 는 원고 김 ○○ 의 모친이다.

피고는 2014. 6. ○○ 경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장애인인 원고 김 ○○ 을 간음하였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김 ○○ 이 가출하였음을 기화로 원고 김 ○○ 을 유인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여 청소년인 원고 김 ○○ 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김 ○○ 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2014. 6. ○○ 경부터 2014. 10. ○○ 경까지 ○○○ 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 김 ○○ 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0,000원 및 치료비 2,064,6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 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판단

#### 가.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여부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

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갑 제4,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 ○ 은 전체 IQ 70 정도로서,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발달이 부진하고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며 인지적인 제한으로 인하여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거나 사회적으로 적응하는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 김 ○ 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갑 제2, 5 내지 8, 14, 15, 17, 2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6. 부터 2014. 6. 경 사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송파역 부근에 있는 M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원고 김 ○ 을 모텔에서 숙박시켜 주는 대가로 유사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5.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 김 ○ 과 유사성교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유사성교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피고가 원고 김 ○ 과 유사성교 행위를 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 고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 의 법,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를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제1조), 아동·청소년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고(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역시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도모·보호하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가 성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회적·공공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이 보호받는다 할지라도 이는 그러한 행위자를 처벌함으로써 사회질서 확립·유지되는 반사적 효과가 있는 데에 불과한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곧바로 해당 아동·청소년이 성매수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해자로 평가된다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이 성매수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갖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개개 아동·청소년이 성매수자를 상대로 하여 개별적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범위 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법률 제38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형사정책적인 고려에서 비롯된 입법적 결단일 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사건 법률도 자발적으

로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은 "대상아동·청소년"이라고 하여 성범죄의 피해자인 "피해아동·청소년"과 개념적으로 구별하고 있고(제2조 제6호, 7호),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제39조, 제40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 법률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성을 매수한 상대방의 행위가 이 사건 법률을 위반한다 할지라도 이는 사회질서를 유지·확립하기 위함이지 아동·청소년에 대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후 성매수자를 상대로 그 성매수의 위법성만을 내세워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더라도 이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인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 손해배상(기)  
원 고 1.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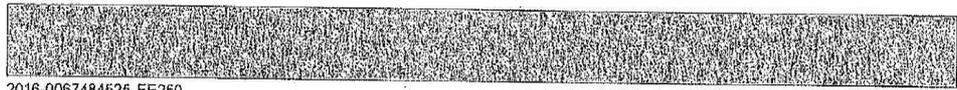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2.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연 담당변호사 최석봉  
피 고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광지, 봉기태  
변 론 종 결 2016. 3.  
판 결 선 고 2016. 4.

주 문

1. 피고는 원고 김     에게 4,000,000원, 원고     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6. 부터 2016. 4.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김 ○○에게 22,000,000원, 원고 ○○○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6.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6. ○○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원고 김 ○○(여, 13세)을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신창역에서 만나, 원고 김 ○○이 가출하여 잠을 잘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원고 김 ○○에게 잠을 재워주겠다면서 함께 전주로 가자고 제안하여 원고 김 ○○과 함께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전주로 이동하였다. 그 다음 피고는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텔에서 모텔비 35,000원을 지불하고 원고 김 ○○과 함께 들어가 원고 김 ○○으로 하여금 투숙하게 하고, 그 대가로 원고 김 ○○과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죄행위'라 한다).

나. 이 사건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5. 2.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범죄행위 당시 원고 김 ○○의 전체 지능지수(IQ)는 67~70 정도로



정신지체 수준이다.

라. 원고 는 원고 김 의 보호자(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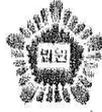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 김 에 대한 이 사건 범죄행위는 원고 김 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인정되는바, 피고는 위 불법행위의 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범죄행위가 비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원고 김 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성매매한 것이므로 원고 김 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하여 '선량한 성풍속'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보호'도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는 점, ② 아동·청소년들은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약자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 김 은 이 사건 범죄행위 당시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일 뿐만 아니라 그 지능지수 등에 비추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④ 더욱이 피고는 원고 김 의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와 가출 등으로



인한 궁박한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숙식제공 등으로 유인하여 성적 만족을 얻은 자로서, 그 표면적인 폭행이나 협박의 유무를 불문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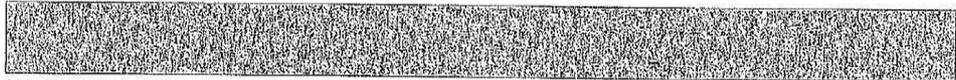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위자료 : 이 사건 범죄행위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원고 김 〇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김 〇은 4,000,000원, 원고 〇은 1,000,000원으로 정한다.

2) 적극적 손해 : 원고 김 〇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해 최소 48,618,860원(= 치료비 2,009,060원 + 개호비 31,609,800원)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우선 그 일부인 12,000,000원(= 치료비 2,000,000원 + 개호비 10,000,000원)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손해의 발생 내지 이 사건 범죄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손해배상금(위자료)으로, 원고 김 〇에게 4,000,000원, 원고 〇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6. 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성출력용

관사





# 정본입니다.

2016. 4. 7.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주사보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